

## 2021년도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

해외취업에 성공한 우리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적응 지원 및 일정기간 경력개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"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" 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### I 사업 개요

#### 1. 지원내용

- 지원인원 : 3,960명(선진국 2,700명, 신흥국 1,260명)  
\* 지원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#### ○ 지원금액

구 분	지원금액	지원방식
신흥국 분류국가 (지원금 우대국가)	600만원	(1차) 취업후 1개월 : 300만원 지급 (2차) 취업후 6개월 : 100만원 지급 (3차) 취업후 12개월 : 200만원 지급
선진국 분류국가	400만원	(1차) 취업후 1개월 : 200만원 지급 (2차) 취업후 6개월 : 100만원 지급 (3차) 취업후 12개월 : 100만원 지급

※ 2020년도 사업 참여자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공고내용에 따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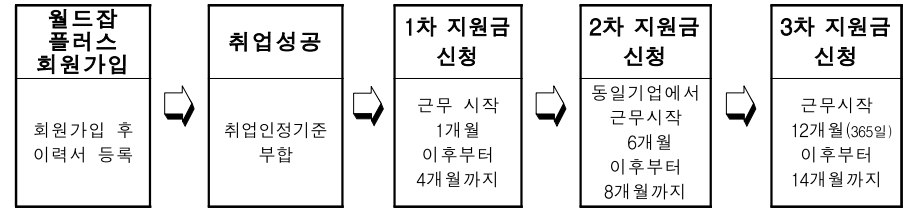
#### ○ 국가구분

- 지원금 우대국가 : 동남아, 중남미, 중동, 유라시아, 아프리카 등 신흥국  
\*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국가
- 선진국 분류국가 : 25개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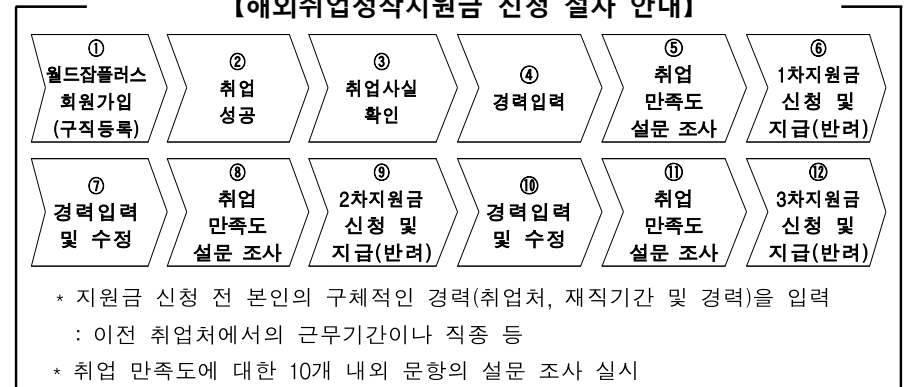
#### 선진국 분류국가

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미국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홍콩

#### 2. 지원절차 \* 세부 지원 절차는 [붙임1] 참조



#### 【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】



※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에 대해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하거나 취업사실확인 승인 완료하여야 함(2,3차 동일기업 재직 시는 생략)

## II 지원 자격 요건

1. 지원대상 : 아래 ①-④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자

- ① 만 34세 이하(86. 1. 2. 이후 출생자)인 자
- ② 신청자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
  - 신청자 중 미혼자의 경우는 **본인과 부모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**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  - 신청자 중 기혼자의 경우는 **신청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**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(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,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)

<기준 금액>

취업일자	건강보험료율	보험료 기준 금액*
'21년 1월까지	6.67%	₩319,950
'21년 2월부터	6.86%	₩329,070

\* 보험료 기준 금액은 6분위 월 소득 금액에 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며, 지역가입자에도 준용  
(단,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실 부담비율이 공시된 보험료율의 1/2인 3.43%(20년도는 3.335%)이므로 부과금액의 2배를 합산

-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(회원가입) 후 근로계약서\*를 작성한 자
  - \*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사한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함
- ④ 아래에 제시된 취업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

1차 지원금	2차 지원금	3차 지원금
(신흥국) '20. 7. 5.	'19. 12. 15.	'19. 6. 15.
(선진국) '20. 10. 1.	(1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)	(2차 지원금 수령한 경우)

※ '20년도 취업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신청 기한 확인 후 신청(7p 참조)

## 2. 취업인정기준

- ① 취업비자 :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
  - ※ 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(유사)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
  - 국가별 취업비자 인정기준은 [붙임2] 참조
  - 관광,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는 불인정
  - 단,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(예) 중동의 경우,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'멀티비자'가 발급
  -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\*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
    - \* 해외취업알선사업, 해외취업연수사업(K-Move스쿨 등) 등
- ② 취업직종 : 단순노무직종 제외(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)
  -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에 취업 직종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작성한 직종 설명서(직무 기술서)를 추가 제출하여 단순노무직이 아님을 증명

### 제외 직종(단순노무직종)

청소(환경미화)원, 세차원, 주유원, 가정부(가사, 육아도우미), 음식서비스종사자(주방보조, 음식서빙 등), 숙박시설종사자(호텔, 모텔,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)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

③ 임금수준 : 연봉 1,600만원 이상

- 연봉 환율은 '21. 1. 4. 고시환율 적용
  - ※ 2020년도 취업자는 해당연도 공고 환율 및 연봉기준 적용
- 근로계약서 상 연봉이 기준액 미만이나, 실 수령액이 기준액 이상일 경우는 신청일 기준 반드시 최근 연속된 3개월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증명

#### ④ 근로계약기간 : 1년 이상

- 공단사업을 통한 워킹홀리데이비자 취업자 중 한 직장에서 1년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(호주, 홍콩 등), 타 업체와 추가 계약하여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

#### ⑤ 취업대상 업체 : 다국적기업, 현지로컬기업, 국내기업 해외법인, 한상 등

- \*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,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제외

### 3. 지원제외 대상 및 환수조치

#### ○ 제외대상

- 해외취업정착지원금(舊 해외취업성공장려금)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(1차 지원금만 지원받은 경우에도 동일)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
-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임의로 위변조한 경우
- 동일차수 중복지원 등 중복수혜가 발생한 경우
- 『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』에서 지원불가로 판단되는 경우

#### —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—

- 위 원 장 : 국제인력본부장
- 심의위원 : 해외취업 또는 이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단 직원 및 전문가
- 심의내용 : 지원대상자 결정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
- 간 사 :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공단 소관 부서장

#### ○ 환수조치

- 상기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 조치

### III 사업일정 및 신청 방법

신청기한은 월드잡 시스템에 따르며,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임을 유의

#### 1. 사업일정

- 사업기간(예정) : 2021.1.4. 09:00부터 ~ **예산소진 시까지**  
 ※ 예산소진 임박 시 마감일 사전 공지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마감 기한 내 접수된 신청서는 검토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
- 지급일자 : 매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신청서 취합·승인 후 다음달(익월) 15일 및 말일 경 지급  
 ※ 예시 : '21.1.4.~1.15. 신청 → 2.15. 지급 / '21.1.16.~1.31. 신청 → 2.28. 지급  
 ※ 출입국 기록 추가 확인 등 기타 사유 발생 시 지급일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음

#### 2. 신청 방법

- 「월드잡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설치→로그인→마이페이지→정착지원금 신청하기」 이용 (모바일)
- 「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로그인→마이페이지→정착지원금 신청하기」 이용 (PC)
-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(jpg, png 등. pdf는 제외)로 각각 업로드 후, '신청하기' 버튼 클릭

#### 3. 신청기한

- ① 1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
- ② 2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
 ※ 단, 1차 승인자가 동일업체에서 6개월 간 계속 근로한 경우만 신청 가능
- ③ 3차 지원금 : 근로 개시 12개월(365일)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
 ※ 단, 2차 승인자가 12개월(365일) 이상 근로한 경우 신청 가능
- ④ 1,2차 지원금 수령 후 이직한 경우 3차 지원금 신청
  - 신청기한은 최초 기업 근로 개시 12개월(365일)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이며 이직 준비 기간은 반영되지 않음
  - 지원 금액은 1,2차 지원금 당시의 최초 취업국가 기준 적용

- 취업인정기준은 1차 지원금 신청기준과 동일
- 1,2차 지원금 수령 당시의 회사에서 근무한 최소 6개월 이상의 경력과 이직한 회사에서의 경력을 합산하여 12개월(재직증명서 기준)이 되어야 함
- ⑤ '20년도 취업자 중 아래에 제시된 취업일 해당자는 '21.2.26. 18:00까지 신청하여야 함(제시된 취업일 이후 취업자는 본인 해당 기간 내 신청)
  - (신흥국) '20.7.5.~'20.12.31. 취업자의 경우 '21.2.26.까지 1차 지원금을 신청
  - (선진국) '20.10.1.~'20.12.31. 취업자의 경우 '21.2.26.까지 1차 지원금을 신청
  - '20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'20년도에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'19.12.15.~'20.6.27. 취업자의 경우 '21.2.26.까지 2차 지원금을 신청 ('20.6.28.이후 취업자는 본인의 2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 가능)
  - '20년도 사업에 참여하여 '20년도에 2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중 '19.6.15.~'19.12.27. 취업자의 경우 '21.2.26.까지 3차 지원금을 신청 ('19.12.28.이후 취업자는 본인의 3차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 가능)

<제출서류>

1차 지원금	(1) 취업비자 (2) 근로계약서 (3) 재직증명서(근속 1개월 이후 발급) (4) 본인통장사본 (5)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 상세본) (6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[서식1] 참조) (7)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부모/배우자/기타가족용)([서식2] 참조)
2차 지원금	(1) 취업비자 (2) 재직증명서(근속 6개월 이후 발급) (3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[서식1] 참조)
3차 지원금 (동일기업 근무자)	(1) 취업비자 (2) 재직증명서(근속 12개월(365일) 이후 발급) (3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[서식1] 참조)
3차 지원금 (이직한 경우)	(1) 취업비자 (2) 1·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(근속 6개월 이후 발급) (3)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(4)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(5)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(본인)([서식1] 참조)

4. 제출서류

- 제출서류에서 모든 지원 자격 요건 및 취업인정기준이 반드시 확인 가능해야 함
- 서류상 언어가 국영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제출
  - ※ 번역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신청자 본인이 하여도 무관함
- 지원금 신청 전 현지 발급 서류에 대해 영사관 공증(또는 아포스타유 확인) 후 제출하거나 취업사실확인 신청·승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(취업사실확인 관련은 별도 파일 참조)
  - ※ 단계별 절차 생략 여부는 아래 표와 같음

지원금 신청 단계		취업사실확인 또는 공증 절차
1차		필수
2차		생략
3차	동일기업	생략
	이직(근속6개월 후 이직)	필수

### 제출서류 준비 및 작성 시 유의사항

차수	제출 서류	유의사항
1차 지원금	① 취업 비자	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▶ 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만 인정 가능(2, 3차도 동일) ▶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
	<b>&lt;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취업사실확인*영사관 공증/아포스티유 확인을 득한 후 신청&gt;</b> <b>* 반드시 월드잡플러스의 취업사실확인 온라인 승인 이후 지원금 신청</b>	
	② 근로 계약서	- 기업현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, 근로계약기간, 취업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내용, 주요 복리후생(사회보험, 숙식 제공 등), 근로계약 체결일, 사용자·근로자 서명 등 기재 ▶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Offer Letter 등도 가능하며 사업주 서명 필히 기재 ▶ 미국의 경우 DS-7002(TIPP)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 가능 : 단 취업자, 스폰서 기관,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완성본에 한함
	③ 재직 증명서	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등 기재 ▶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<b>반드시 근무시작 1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</b> 를 제출(1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
	④ 통장 사본	- 입금 가능한 국내 실물 통장 사본 또는 인터넷 통장 표지 제출 ▶ 적금통장, 해외 은행 통장 등 송금 불가능한 통장 제출 불가 ▶ 불가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가족 통장 제출 ▶ 인터넷뱅킹 <b>단순 캡처 화면 인정 불가</b>
	⑤ 가족 관계 증명서	- 반드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<b>상세본</b> 제출 ▶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의미하며, <b>취업 전(前)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</b> 제출(일반본 제출시 반려됨)
⑥ 개인 정보이용 및 취업정보 제공 동의서	- 동의서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으며 <b>본인용 1부와 부모/배우자/기타가족용 1부 모두 제출</b> ▶ <b>부모/배우자/기타가족용</b>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/자녀(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)의 <b>자필 서명 또는 날인</b> 이 모두 있어야 하며, 부모님의 이혼·사망의 사유로 모두의 서명을 받지 못할 경우 <b>부 또는 모(부양자)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본)를 추가로 제출</b> 해야 함( <b>붙임3 참조</b> )	

차수	제출 서류	유의사항
2차 지원금	① 취업 비자	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▶ 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▶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 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(앞면) 제출(*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 ▶ <b>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</b>
	② 재직 증명서	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▶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<b>반드시 근무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</b> 를 제출(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
	③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 - 공고에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용 1부 제출[서식1]	
3차 지원금 (동일 기업 재직)	① 취업 비자	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▶ 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▶ 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 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(앞면) 제출(*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 ▶ <b>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</b>
	- 1·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 <b>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(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)</b>	
	② 재직 증명서	-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 ▶ 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<b>반드시 근무시작 12개월(365일)이후에 발급된 서류</b> 를 제출(12개월(365일)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
③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 - 공고에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용 1부 제출[서식1]		

차수	제출 서류	유의사항
3차 지원금 (이직)	① 취업 비자	- 합법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가능한 비자 ▶미국 취업자(J1 비자 포함)의 경우 여권에 부착된 비자 사본 필히 제출 ▶태국 취업자의 경우 Work permit과 여권에 부착된 Non-immigration B 비자 함께 제출 ▶일본 취업자의 경우 재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류카드 (앞면) 제출(*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불인정) ▶중국 취업자의 경우 거류증(工作) 추가 제출  - 1·2차 지원금 신청 당시 제출한 비자가 만료된 경우 계속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갱신된 비자를 추가로 제출 (갱신된 비자 제출 시 기존 비자 사본도 함께 제출)
	② 재직 증명서 (이직 전)	- 3차 지원금 신청 전 재직했던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는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-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하며 <b>반드시 최초 근무시작 6개월 이후에 발급된 서류</b> 를 제출 (6개월 경과 이전에 발급한 서류의 경우 반려됨)
	③ 근로 계약서 (이직 후)	- 이직한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, - 기업현황(업체명, 주소, 전화번호 등), 근로계약기간, 취업직종, 임금수준, 근로시간, 업무내용, 주요 복리후생(사회보험, 숙식 제공 등), 근로계약 체결일, 사용자·근로자 서명 등 기재  ▶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Offer Letter 등도 가능하며 사업주 서명 필히 기재 ▶미국의 경우 DS-7002(TIPP) 서류도 근로계약서 대체서류로 가능 : 단 취업자, 스폰서 기관, 취업처 서명 모두 기재된 원본에 한함
	④ 재직 증명서 (이직 후)	-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에도 기업명 및 재직자 성명, 담당업무, 서류 발급일자 및 근무시작일(재직기간),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- ②와 합산하여 반드시 12개월(365일) 이상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▶서류 발급일자와 근무시작일은 연월일까지 기재되어야 함
	⑤ 개인정보이용 및 취업정보제공 동의서	- 공고에 첨부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용 1부 제출[서식1]  <b>&lt;이직 후 3차 지원금 신청 시에는 이직 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모두에 대해 취업사실확인/영사관 공증/아포스티유 확인을 득하여야 함&gt;</b>

## IV 기타 유의사항

- (접수순 지급)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는 검토 후 접수순으로 지급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**소진 시 즉시 마감**
- (온라인 접수)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는 **월드잡플러스 어플리케이션** 또는 **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(www.worldjob.or.kr)**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- (신청기한) 신청기한은 개별적으로 안내되고 있지 않으니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필요
- (소명기한) 출입국 기록 등 기타 소명 사유 발생 시 **신청자의 지급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소명**해야 하며, 기한 내 소명하지 않을 시 서류 승인 취소 및 지원금 지급 불가  
**※ 소명기한이 남았더라도 반드시 지원금 사업기간 내 소명하여야 하며, 마감 이후 소명은 불가**
- (기타 사항) 지원금 신청서(증빙서류 포함)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환수

### ▲ 서류마감기한이 남았더라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- 1차 지원금 신청 :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
- 2차 지원금 신청 :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
- 3차 지원금 신청 :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

- ※ 월드잡플러스 내 연락처(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등) 기재착오 또는 변경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연락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

**붙임 1**      **사업추진절차**

**〔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절차〕**

순차	주체	일정	수행 내용
①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	구직자	연 중	○ 월드잡플러스 (www.worldjob.or.kr) ☞ 기존회원 가입 불필요
↓			
② 취업성공	구직자	연 중	○ 취업 증빙 서류 확보 및 1차 지원금 신청 준비
↓			
③ 1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* 근로개시 1개월 이후부터 3개월 간 신청 가능	○ 업체에서 1개월 근무 ○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
↓			
④ 1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*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○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☞ '21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
↓			
⑤ 2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* 근로개시 6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	○ 동일업체에서 6개월 근무 ○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
↓			
⑥ 2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*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○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☞ '21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
↓			
⑦ 3차 지원금 신청 (증빙서류 제출)	구직자	* 근로개시 12개월 이후부터 2개월 간 신청	○ 최초 취업일 후 12개월 근무 ○ 비자사본 등 제출서류 월드잡플러스 업로드
↓			
⑧ 3차 지원금 지급 또는 반려	공 단	* 월 15일 및 말일 기준으로 승인 후 익월 입금	○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또는 지원요건 미충족 시 반려 ☞ '21년 지원은 예산범위 내 접수순 마감

**붙임 2**      **취업비자 인정기준**

순번	국가	취업비자 인정기준
1	일본	- 취업비자 : 기술·인문지식·국제사무, 기능
2	캐나다	- 취업비자 : Work Permit, 한-캐FTA - 인턴비자 : Post-graduation Work Permit
3	호주	- 취업비자 : 482고용비자, 407비자 등
4	싱가포르	- 취업비자 : EP(전문인력비자), S pass, WP(work permit)
5	중국	- 취업비자 : Z비자, (홍콩 : EMPLOYMENT비자)
6	미국	- 취업비자 : H-1B, H-1C, H-2B 등 - 인턴비자 : OPT, J-1
7	뉴질랜드	- 취업비자 : Work Visa
8	필리핀	- 취업비자 : 9G비자, 47(a)(2)비자, AEP, Clark Visa
9	인도네시아	- 취업비자 : Stay Permit Index가 표시되어 있는 ITAS/KITAS
10	베트남	- 취업비자 : LD (거주증 앞뒷면 모두 제출)
11	말레이시아	- 취업비자 : Employment Pass
12	아랍에미리트	- 취업비자 : Residence Visa
13	독일	- 취업비자 : Residence For Employment, EU Blue Card

※ 상기 국가 외 취업국가는 1년 이상의 근로가 가능한 해당국 취업비자 인정

**붙임 3**      **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**

- 신청자 본인이 기혼일 경우 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취업 전월 이후 발급)만 제출
- 신청자 본인이 미혼이며 부모 모두 생존할 경우 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(취업 전월 이후 발급)만 제출
- 단, 신청자가 미혼이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/재외국민/외국인/이혼일 경우 아래 표에 안내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

**<추가 제출서류>**

구분	부	모	제출서류(상세본)	추가서류	비고
신청자 미혼	생존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)	-	
	생존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)	-	
	생존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이혼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-	
	이혼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	
	이혼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	
	이혼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사망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-	
	사망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부 또는 모)	-	
	사망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본인)	-	
	사망	재외국민·외국인	가족관계증명서(부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재외국민·외국인	생존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재외국민·외국인	이혼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재외국민·외국인	사망	가족관계증명서(모)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	재외국민·외국인	재외국민·외국인	-	재외국민·외국인 증빙서류	

\*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 작성  
 \*\* 부모·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발급 가능(정부24, 대법원)

[서식 1] ※ 모든 항목 작성 및 서명 필요

**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(본인용)**

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출입국 기록,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, 유사사업 지원금 수혜 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를 관할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조회할 정보 및 목적

수집정보	이용목적	이용기간
성명	출입국 기록 조회를 통한 해외근무 사실 확인	취업일로부터 <b>2년간</b>
성명	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액 조회를 통한 소득분위 확인	
성명	유사사업 지원금 수혜 여부 조회를 통한 중복 수혜 확인	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기타 고지사항>  
 ※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해외근무 사실·소득분위·중복수혜 확인	주민등록번호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    동의     미동의

2021. . . .

주민등록번호: . . . .  
 이 름: . . . . (서명)

**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(본인용)**

본인은 정부의 해외취업지원사업(K-Move스쿨,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, 멘토링사업, 해외취업정착지원금사업 등) 참여자의 사후관리지원 및 해외취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하여 취업정보 등에 관한 정보 요구 시 성실히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제공 정보 및 목적

제공정보	목 적	이용기간
취업국가, 취업처, 직종, 이직/퇴직 여부, 임금, 국내 복귀·취업여부	참여자의 사후관리 지원 및 해외취업의 효과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	취업일로부터 <b>2년간</b>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    동의     미동의

2021. . . .

취업자 : . . . . (서명)



##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

(부모/배우자/기타가족용)

본인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 의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인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정보를 관할 기관에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- 수집 정보 : 성명, 신청자와의 관계,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
- 조회 정보 : 해당자의 건강보험자격사항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
- 조회 목적 : 소득분위 확인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조회
- 정보 보유기간 : 준영구

성 명	신청자와의 관계 (부/모/배우자 등)	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	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	서 명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			동의( ), 미동의( )	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 
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자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기타 고지사항>

※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개인정보 처리사유	개인정보 항목	수집 근거
건강보험자격 및 보험료 납부액 조회를 통한 소득분위확인	주민등록번호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및 고용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

2021. . .